

무주택 서약서

(간부 숙소 입주자용)

본인은 간부 숙소를 입주함에 있어 관리부대가 정한 근무지역 내에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도 포함한다. 이하 같으며 “부양가족” 이라 한다.) 전원이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간부 숙소 입주 기간 본인 및 부양가족이 근무지 내에 주택을 소유 시 자진신고하고 간부 숙소에서 3일 이내 퇴거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확인 시 본인 및 부양가족이 근무지역 내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간부 숙소를 퇴거 하고 위반기간 동안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의 별표5에 해당하는 퇴거지원관리비를 납부하겠습니다. 미납 시에는 급여 중앙공제 등 관리부대에서 공제 또는 법률적 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